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2015년 6월 결손(불납결손) 결정결의

1. 무재산 및 행불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결손결정 결의코자 하며,

2. 불납결손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3조,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6월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은 즉시 결손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가. 결손처분일 : 2015. 6. 1 ~ 6. 30

나. 결손 건수 및 금액 : 2,283건/금4,394,062,650원
(금사십삼억구천사백육만이천육백오십원)

붙임 1. 결손결정결의서 1부.
2. 결손(불납)집계표 1부.
2. 결손(불납)결정결의내역 1부. 끝.

주무관 서복순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세무관리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전결 07/10 문경수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5614 ( ) 접수 ( )
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24 /전송 02-3423-8832 / nicebokja@gangnam.go.kr / 부분공개